

도시관리계획(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63호(2025. 5. 8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(경미한 사항)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5월 14일

강 남 구 청 장

I. 결정(변경)취지

- 「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」 으로 결정된 대치동 890-16, 890-20번지에 대한 높이계획을 지구단위계획(경미한 사항) 결정(변경) 하고자 하는 사항임.

II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 없음)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 없음)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 없음)

구분	구 역 명	위 치	면적(m ²)	비 고
기정	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	강남구 역삼1동, 역삼2동, 삼성2동, 대치4동 일원	959,160	서고시 제1994-189호 (1994. 6. 15)

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 없음)

③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

1. 가구 및 공동개발 결정조서(변경 없음)

2. 건축물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가. 건축물의 용도계획 결정조서(변경 없음)

나. 건축물의 밀도 결정(변경)조서

1) 건폐율(변경 없음)

2) 용적률(변경 없음)

3) 높이계획(변경)

가) 건축물 높이 결정(변경)조서

☐ 건축물 높이계획(변경)

구분		계획내용				비고
		기정		변경		
		기준높이	최고높이	기준높이	최고높이	
상업 지역	테헤란로 간선부	90m	120m	108m	144m	대치동 890-16, 890-20번지에 한함

☐ 높이계획 변경사유서

구분	위 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변경	대치동 890-16, 890-20	• 높이 계획 변경 (경미한 변경 범위 20% 이내)	• 합리적이고 유연한 토지이용을 고려한 건축계획에 따라 높이 완화

※ 상기사항 외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음

3. 기타 사항 결정조서(변경 없음)

4.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 없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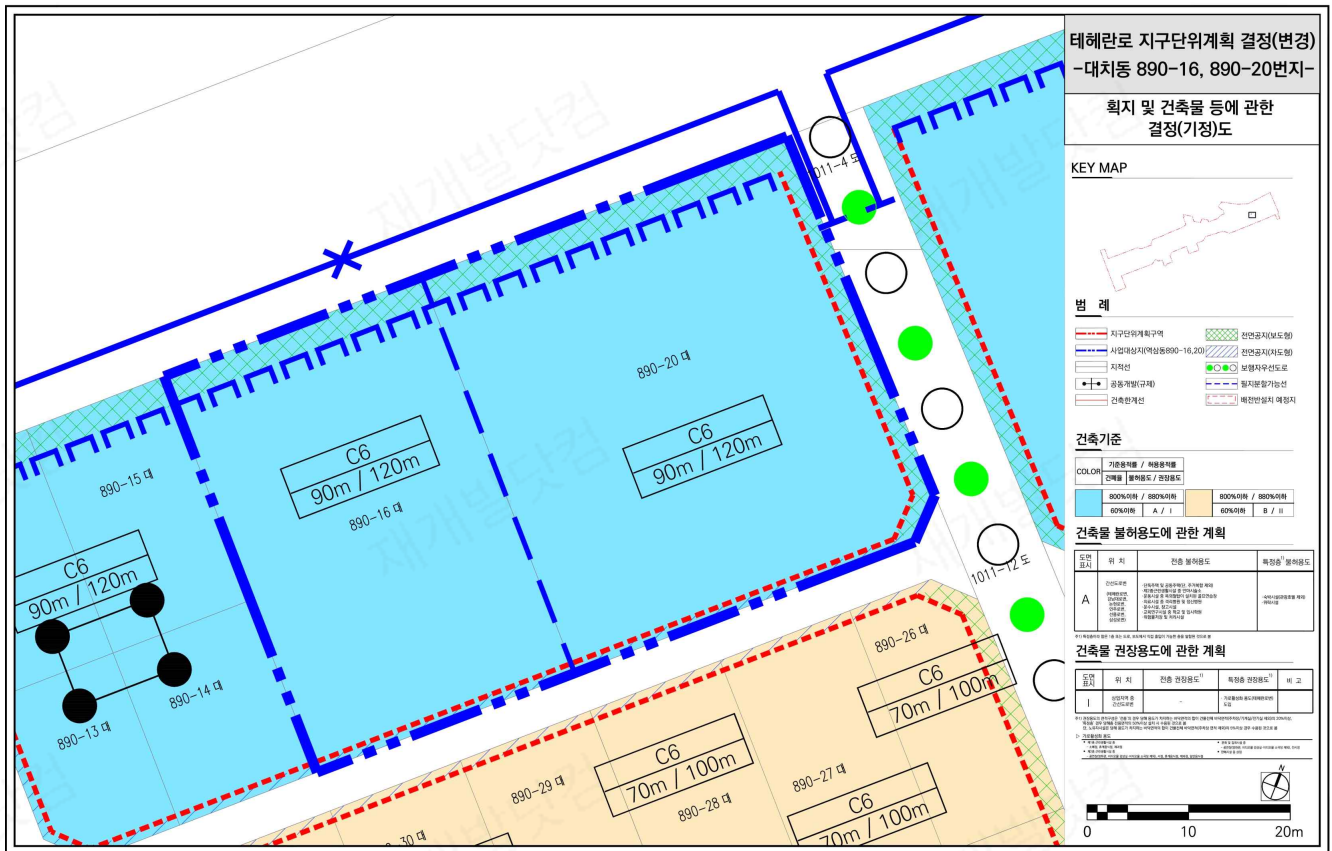
5.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결정조서(변경 없음)

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(권한 : 구청장)(변경 없음)

III. 관계도면: 붙임 참조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(<http://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기정)도



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